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12. 12.(월)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40
제출일자	2022.11.17.
회부일자	2022.11.22.



기 획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영두)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이선희 의원 외 16명

2. 제안이유

- 경상북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상북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나. 출연금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다. 출연금등의 반납처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라. 정산 지침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마. 경상북도의회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4. 관계법령

- 가. 「지방공기업법」
-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다. 「지방자치법」
- 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5.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6. 관련부서 협의

가. 규제심사: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7. 검토의견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의 정산과 반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 안 제5조(출연금등의 집행기준)는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규정함.
- 안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는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목적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지사는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안 제7조(반납처리 등)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도에 반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정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도록 규정함.
- 안 제8조(정산 지침)는 도지사는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 및 반납하도록 규정함.
- 안 제9조(의회 보고)는 도지사가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결산 승인 시(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장려혜택 제공 등)는 도지사가 공공기관이 자체 수입 확대 등으로 출연금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장려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거나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경상북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상북도 재정 건전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검토 결과, 타당성과 적법성이 인정됨.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보조금과 달리 그에 대한 반대급부, 정산, 잔액 반납 등의 의무가 없어 대체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다음 연도 자체재원으로 활용되어왔으나,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 부적정한 집행 여부와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사후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

※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도입 지자체

- 광역지자체(3개소) : 대전, 부산, 충남 / 기초지자체(4개소) : 김해, 밀양, 창원, 태백

-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모든 출연사업을 대상으로 법적근거, 보조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 존속 여부 및 적정 소요를 결정하도록 하고, 타당성이 미흡한 출연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보조사업 등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매년 출연금의 규모는 증가되어 왔음.

※ 최근 3년간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 출연금 및 순세계잉여금 현황(결산기준)

연도	2019	2020	2021
출연금	523억원	642억원	943억원
순세계잉여금	3,764억원	3,921억원	4,844억원

- 본 제정조례안에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보조금에 준하여 집행되던 위탁사업비 등에 대해 포괄적인 정산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연금등을 정산 및 반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경상북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출자·출연금 집행현황(2022년 지방재정공시)

- ☐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경상북도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3,405,604	19,124	0.14%	94,329	0.70%	
일 반 회 계	10,640,197	19,124	0.18%	87,829	0.83%	
특 별 회 계	1,357,127	0	0%	0	0%	
기 금	1,408,280	0	0%	6,500	0.46%	

-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9,377,742	9,708,536	11,421,322	13,187,912	13,405,604
출자금 (B)	21,447	21,102	20,979	22,802	19,124
출자금 총액 (C)	443,196	464,298	485,277	508,079	527,203
출자금 비율 (B/A)	0.23%	0.22%	0.18%	0.17%	0.14%
출연금 (D)	61,722	53,139	52,255	64,239	94,329
출연금 비율 (D/A)	0.66%	0.55%	0.46%	0.49%	0.70%

-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 ☐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 속에 소상공인 융자 지원 및 도내 디지털·그린뉴딜관련 기업 대상 투자자금 및 우대보증 지원 등으로 출연금이 상승하였습니다.